

의안번호	2213173
의 퇴 인	안태준의원
회 답 일	2025.11.11.
추 계 번호	25B5270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의3 (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)	시·도지사는 제49조제1항¹⁾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(이하 "품질점검단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(제1항) • (현행) 사전방문 실시 후 사용검사 신청 전 품질점검단 설치·운영 • (개정안) 사전방문 실시 후 조건 삭제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48조의3 (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제49조(사용검사 등)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(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(이하 "분할 사용검사"라 한다)를 받을 수 있고,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(이하 "동별 사용검사"라 한다)를 받을 수 있다.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, 현행법상 ‘사전방문 실시 후’로 한정되어 있던 운영시기를 삭제하여 사전방문 실시 전에도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품질점검단의 운영기간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그런데 사전방문 실시 전 품질점검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, 향후 시·도별 사전방문 전 품질점검단 운영이 이뤄질 단지의 수, 운영 시점, 점검 횟수 등이 불확정적이므로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